

[별표 5]

**안전사고의 예외**  
(제13조제3항 관련)

구분	주요 내용
대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	· 적과 적대세력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적, 물적 피해
군기사고	· 「부대관리훈령」 제226조에 해당하는 사고
자학행위	· 자살, 자해 시도 또는 실행
직무로 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사망	· 불법약물, 또는 기타 물질 남용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 · 非작업상 건강장해(예 : 당뇨, 고혈압 등) · 입대/채용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체상해 · 군 복무로 인해 특별히 악화된 것이 아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근골격계 장애 · 응급조치 이후 통상적 치료 등을 위한 입원 · 관찰, 상담, 진단검사 등을 위한 입원 · 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망
치료 과정의 신체 부작용	· 적절한 의료 책임자 지시 하 사용한 약물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부정적 신체 반응
계획정비 과정에서의 손상	· 항공기, 드론 등의 계획정비 과정에서 외부 물질에 의한 엔진 손상(FOD)
시험 및 훈련 등에 따른 자산 소모 및 주변 피해	· 미사일이나 화포의 발사 등 인가된 시험 또는 전투훈련 중 장비나 자산에 발생한 예상된 고의적 손상, 발사 결과로 발생한 정상적인 주변 피해
자연재해	「재난 및 안전관리 관리법」 제3조 제1호의 가항에 규정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 *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 등
기타	· 국방부 요원의 직접감독하에 있지 않았던 도급업체 고용인이 연루된 도급업체 사고